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78

발의연월일: 2021. 10. 18.

발 의 자 : 아수진비 · 강민정 · 강은미

김경협・김두관・송옥주

심상정 • 안호영 • 윤미향

윤준병 · 임종성 의원

(11일)

제안이유

최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항만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항만노동자의 작업여건과 안전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우리나라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의 체약국으로서 협약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포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 이에 컨테이너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컨테이너의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컨테이너 소유자는 현행법에 따라 안전점검방법을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으로 컨테 이너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함. 국내 컨테이너 소유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안전점검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의 경우 국내항만 내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시에도 처벌조항이 미비한 상태임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행법에서는 컨테이너 형식승인시험을 받고 형식승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증서에 대한 별도의 갱신절차가 없어 컨테이너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하고 있는지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선박용물건 등의 형식승인증서와 같이 유효기간을 정하고 갱신토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여 취소된 형식승인시험 합격증서를 사용하여 형식승인을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
- 나. 컨테이너의 안전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컨테이너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컨테이너 등의 안전판을 제거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사고 등으로 인해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성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식승인 이후 소홀할 수 있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 다.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안전점검사업자에게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승인일로부터 10년마다 안전점검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하며, 법에서 정한컨테이너 소유자의 의무와 안전점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을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토록 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 라.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의 내용 중 항만 내 국내 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컨테이너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에 위 해가 될 수 있는 불량컨테이너를 퇴출하기 위한 컨테이너 통제제도 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 마.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승인받은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등록된 안전점검사업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 바. 안전점검사업자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가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안전점

검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3조, 제84조 및 제89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선박검사증서등을 갖추어"를 "선박검사증서등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을 갖추어"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얻고 자"를 "받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얻은"을 "받은"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컨테이너의"를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 항) 전단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형식승인판(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라 한다)"을 "안전승인판(이하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라 한다)"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를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중 "얻은"을 각 각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9 항"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

한 지도·감독 등"을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컨테이너지 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4. 제조 또는 수입하는 컨테이너가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 등의 변경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제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해야 한다.
 - 1. 컨테이너가 원래의 승인사항 및 안전승인판에 있는 정보와 다르 게 개조된 경우
 - 2. 제23조제9항제1호에 따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 3.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제23조의3(수집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 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이 하 "수집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 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를 제23조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를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방법·승인절차, 안전점검사업자의 기준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전점검의 기준·방법·승인절차, 안전점검의 기준·방법·승인절차,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기준 및 절차"로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승인일로부터 매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CSC)'에 따라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해 국내항만에서 컨테이너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라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

- '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 3.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 4.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안전점검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 6. 안전점검사업자가 사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2(컨테이너의 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또는 수출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소유자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안전승인판의 부착, 승인된 안전점검방법으로 안전점검의 이행 여부, 컨테이너의 구조 등이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이하 "컨테이너통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통제 결과 컨테이너의 안전승인판, 구조, 안전점검방법의 이행 등이 제1항의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컨테이너의 개방 및 수리,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통제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전산망의 구축·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제4항 중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을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8항"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판"을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제7항, 제24조제3항, 제64조제2항"을 "제6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 1의3.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 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 1의4.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76조제2호 중 "제23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에"를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통제에"로 한다.

제78조제5호 중 "제23조제6항"을 "제2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및 형식승인 취소
- 5의3.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승인 취소,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

제80조제1항제11호 및 제18호 중 "제23조제4항"을 각각 "제23조제7항" 으로 한다.

제83조제8호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자
- 8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자
-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 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
- 8의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한 자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를 "선장, 선박직원, 컨테이너 소유자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11항"으로, "컨테이너형 식승인판"을 "컨테이너안전승인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4를 제6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4. 제2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컨테이너 안전점 검사업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검검을 대행하게 한 때 제89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24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의3.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와 제23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와 종전의 제23조제3항후단에 따라 변경 발급된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이하

- "형식승인증서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등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증서등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등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 제3조(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2012년 1월 1일 이전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승인일자 전
 - 2. 2012년 1월 1일 이후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후 10년이 도래하는 승 인일자 전
- 제4조(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점검사업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안전점검사업자가 컨테이너 소유자와의 계약사항,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사업자나업자는 등록 후 1년 내에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①・②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③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u>선</u>	<u>선</u>
박검사증서등을 갖추어 두어야	박검사증서등(전자적 형태의 증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	서를 포함한다)을 갖추어
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	
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선박에 실리어 화	검정 등) ①
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	
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	
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	
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	
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u>얻어야</u> 한다.	<u>받아야</u>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	2
이너형식승인을 <u>얻고자</u> 하는	<u></u> 받고자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	

- 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한다.

<신 설>

③
<u>받은</u>
<u></u> 받아야
<u>해양수산부장관이</u>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3항에 따
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u>한다.</u>
⑤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
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으로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해당 컨테이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검 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u>제4항</u>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u>형식승인판(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라 한다)을</u> 붙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
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일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
여야 한다.
<u>⑦</u>
<u>받은</u>
,
<u>⑧</u> <u>제7항</u>
- <u>안전승인판(이하 "컨테이너안</u>
전승인판"이라 한다)

<u>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u> 컨테이 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 는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u>얻은</u> 때
- 2. (생략)
- 3.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후 2년 이 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 조하지 아니한 때

<u><신 설></u>

<u>⑦</u> 제1항부터 <u>제6항</u>까지의 규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u>⑨</u>
<u>받은</u>
1
<u>받은</u>
2. (현행과 같음)
<u><</u> 삭 제>

- 4. 제조 또는 수입하는 컨테이 너가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 한 국제협약(CSC)' 등의 변 경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 지 않게 된 때
- ① -----제9항-----

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⑧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 5항에 따른 <u>컨테이너형식승인</u> 판을 붙이지 아니한 컨테이너 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u>컨</u>
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u>지도·감독 등</u>
<u>.</u>
<u> </u>
컨테이너안전승인
<u>판</u>
세23조의2(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제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컨테이
너안전승인판을 제거해야 한다.
1. 컨테이너가 원래의 승인사항
및 안전승인판에 있는 정보
와 다르게 개조된 경우
2. 제23조제9항제1호에 따라 형
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 설>

제23조의3(수집검사) ① 해양수산 부장관은 컨테이너 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식승인을 받 아 제조·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이하 "수집검사"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을 취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를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① 전테이너의 소유자는 해양수산 부장관으로부터 자체 안전점검 방법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안 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안 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점 검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u>제23소세2앙에</u>	<u> </u>	건네(<u>기년</u>
	지정시험기관에	위탁	할 수	있
	<u>다.</u>			
제	24조(컨테이너의	안전	점검)	1
		받아		
				- <u>제2</u>
	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	기너
	<u>안전점검사업자</u> -			
	<u><</u> 삭 제>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승 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승인일 로부터 매 10년마다 재검토하 여 그 유효성을 확보하여야 한 다.
- ④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의 기준・방법・승인절차, 안전점검사업자의 기준 및 안 기준 및 절차-----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 · 감 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야 한다.

⑤ 안전점검의 기준・방법・승 인절차,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 록 등) ①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에 따라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해 국내항만에서 컨테이너 안전점 검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 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 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④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기준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CSC)'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안전점검방법의 승인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 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컨테이너 소유자가 거짓이 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점검 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의4(등록취소 및 정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컨테이너

<신 설>

안전점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등록한 경우
-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 3.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 4.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않은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안전점검사업 수행 실적이없는 경우
- 6. 안전점검사업자가 사업의 정 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에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컨테이너의 통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또는
수출되는 내국인 및 외국인 소
유자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안
전승인판의 부착, 승인된 안전
점검방법으로 안전점검의 이행
여부, 컨테이너의 구조 등이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
협약(CSC)'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
(이하 "컨테이너통제"라 한다)
를 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통제 결과 컨테이너의 안전승인판, 구조, 안전점검방법의 이행 등이 제1항의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컨테이너의 개방 및 수리, 컨테이너의 실린 화물의 이적(移積) 또는 폐기 등 안전에 필요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컨

<u>수 있다.</u>
<a>② 해양수사부장과은 제3하에

테이너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알수 없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해당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을 공매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통제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의 청구절차 및 충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전산망의 구축·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제24조제1 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제24조의2제1항 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의 등 록 및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정

- 제39조(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① ~ ③ (생 략)
 - ④ 선박소유자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르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생략)
-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 2. <u>제23조제5항</u>의 규정에 따른 2. <u>제23조제8항</u>-

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_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	<u>.</u>
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9조(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
	-
	-
	-
-컨테이너안전승인판	-
	-
	•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①	-
	-
	-
	-
	-
	-
	-
1. <u>제23조제7항</u>	-
- 2 22	

<u>컨테이너형식승인판</u>의 확인 표시

② (생략)

제75조(보고・자료제출명령 등) 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 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 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 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 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 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 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 장,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 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 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 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 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u> 컨테이너안전승인판</u>
② (현행과 같음)
세75조(보고·자료제출명령 등)
①
<u>제24</u> 조제 <u>1</u>
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 제
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1. 제14조제7항, 제18조제11항, 제20조제5항, <u>제23조제7항,</u> <u>제24조제3항, 제64조제2항</u>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2. · 3. (생략) ② ~ ⑦ (생략)

제76조(선박검사관) 해양수산부장 저 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검사 관으로 임명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수 있다.

1
제64조제2항-
1의2.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컨테이너형식승인에 관
한 사항
1의3. 제24조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업무에 관한 사
<u> </u>
1의4.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2.•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6조(선박검사관)
<u>.</u>

- 1. (생략)
- 2. 제18조제9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확인, 제23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에 관한 업무

3. ~ 6. (생략)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u>제23조제6항</u>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신 설>

1. (현행과 같음) 2
<u>제23조제7항에 따른 컨</u>
테이너검정, 제25조의2제1항
에 따른 컨테이너통제에
3. ~ 6. (현행과 같음) 계78조(천무)
제78조(청문)
1. ~ 4. (현행과 같음)
5. <u>제23조제9항</u>
5의2.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교환・폐
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및
형식승인 취소
5의3.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

6. ~ 11. (생 략)

- 제80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기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검사·확인·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해당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수료를 해당기관에 납부하여야한다.
 - 1. ~ 10. (생 략)
 - 11.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을 신청하는 자
 - 12. ~ 17. (생략)
 - 18.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 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 2조제2항 · 제4항, 제18조제10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u>제23조제4항</u> 후단, 제34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자의 안전점검방법 승인 취
소,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
6. ~ 11. (현행과 같음)
제80조(수수료) ①
1. ~ 10. (현행과 같음)
11. <u>제23조제7항</u>
-
12. ~ 17. (현행과 같음)
18
제23조제7항

따른 증서 등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 ~ ⑥ (생 략)

-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7. (생략)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제3항 ·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신 설>

<신 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3조(벌칙)
 1. ~ 7. (현행과 같음) 8
<u>স</u>
<u>7উ</u>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
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
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
을 받은 자
8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
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
지 않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u>자</u>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
자로 등록한 자

<신 설>

9. ~ 14. (생략)

제84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u>선</u> <u>장 또는 선박직원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1. ~ 6. (생략)
- 6의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붙어 있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

6의3. (생략)

<신 설>

 6의4. (생 략)
 6의5. (현행 제6호의4와 같음)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9조(과태료) ① (생 략)
 제8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8의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한 자
9. ~ 14. (현행과 같음)
제84조(벌칙) ① <u>선</u>
장, 선박직원, 컨테이너 소유자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가-
1. ~ 6. (현행과 같음)
6의2. <u>제23조제11항</u>
컨테이너안전승인판
-
6의3. (현행과 같음)
<u>6의4. 제24조제1항 후단을 위반</u>
하여 등록하지 않은 컨테이
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검검을 대행하
게 한 때
<u>6의5.</u> (현행 제6호의4와 같음)
7.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5. ~ 28. (생략)

③ • ④ (생 략)

2	 	 	 	 -
	 	 	 	 _

- 1. ~ 4. (현행과 같음)
- 4의2. 제24조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
- 4의3.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 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 ~ 28.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